

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(증자)안



구 미 시

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(증자)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강화하여 구미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,
- 나. 자체개발사업 추진여력 확보 및 신공항 배후도시 등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확보.
- 다. 이에 출자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4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(증자)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개요

- (1) 출자기관 : 구미도시공사
- (2) 출자내용 : 구미도시공사 사업 자본금
- (3) 출자금액 : 현금 250억원(전액 시비)
- (4) 출자시기 : 2024년 12월
- (5) 출자금용도 : 개발사업 자본금(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등)

(6)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현황

(단위 : 억원)

현금 출자			비고
계	원시자본금 (’99. 10)	공사전환 출자금 (’23. 12)	
25.01	5.01	20	최대출자 가능한 수권자본금 5,000

나. 구미도시공사 개발사업 범위

- (1)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, 개발, 공급, 임대 및 관리
- (2)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, 개량, 공급, 임대 및 관리
- (3) 관광지,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
- (4) 도로·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
- (5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
- (6)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- (7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수익사업
- (8)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

다. 출자 필요성

- (1) 구미시의 정책사업 검토 및 추진을 위한 사업자본금 필요
- (2) 중·소규모 자체 신규투자(출자)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
- (3) 납입자본금 확충으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(SPC)방식의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법적 최소 출자자본금 기준 충족

- (4) 지역 내 개발사업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동력 확보
- (5)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채투자 등 선순환 구조 마련
- (6) 재무 건정성 확보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

라. 추진(또는 예정) 사업 현황

- (1)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(단계: 타당성 검증)
- (2) 신공항 배후 신도시 조성사업(단계: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)
- (3) 구미1공단 재생(활성화) 사업 참여(단계: 기본계획 수립)
- (4) 기타 중·소규모 자체 경영수익사업 구상 및 검토 중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3조
- (3) 「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4조
- (3) 구미도시공사 「정관」 제4조

나. 비용추계서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공기업법」

- 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
- 증자(增資)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.
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, 1주의 금액, 주식 발행의 시기, 발행
주식의 총수와 주금(株金)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.
-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
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
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.

□ 「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」

제4조(자본금)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, 구미시
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□ 「구미도시공사 정관」

제4조(자본금)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,000억원으로 하고, 시에서
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(증자)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「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4조(자본금) 및 제21조(사업)에 의거 도시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금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4조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 자본금(50억원)의 50%(25억원) 출자 기준
* 출자한도: 직전년도 말 자본금의 10분의 1이내(부채비율 200% 기준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[단위:백만원]

구분 \ 연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합계
세출	25,000	-	-	-	25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[단위:백만원]

구분 \ 연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합계
국비					
도시					
시비	25,000	-	-	-	25,000
민간					
기타					
합계	25,000	-	-	-	25,000

5. 부대의견

- 없음

6. 작성자

- 예산재정과 과 장 강호근(054-480-2530)
팀 장 이현경(054-480-2551)
주무관 남혜란(054-480-255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(2025년)

구분	산출기초	금액 (백만원)
합계		25,000
출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공항 배후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 자본금 - PFV 설립자본금 50억원의 50%지분출자 25억원 *지분법적용 투자주식 	2,500
예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발사업 추진 예비비 	22,500

소 관 부 서		예산재정과
입 안 자	과 장	강 호 근
	팀 장	이 현 경
	담 당 자	남 혜 란 (480-2553)